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6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 한정애·문진석·박홍근

강선우・김성주・윤관석

전혜숙 · 김경만 · 이탄희

이원택 · 김주영 · 허종식

이용우 • 권인숙 • 박성준

황운하 • 맹성규 • 김회재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령은 해당 기업이 도산, 파산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.

2019년 기준 임금체불금액 1조 7,217억원 중 체당금지급액은 26.7% 인 4,599억원에 불과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임.

이에 기업의 도산,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

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및 제7조). 법률 제 호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"을 "지급받지 못한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퇴직한 근로자"를 "근로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고용노동부장관"을 "휴업·경영상 어려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체당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
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기 변동과	제1조(목적)
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	
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	
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, 임	
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	<u>지급받지 못한</u>
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	
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	
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	
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
제7조(체불 임금등의 지급) ① 고	제7조(체불 임금등의 지급) ① -
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 <u>퇴직한 근로자</u> 가 지급	<u>근로자</u>
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	
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	
「민법」 제469조에도 불구하	
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	
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	3. 휴업ㆍ경영상 어려움 등 대
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	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
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	당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

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	<u> 장관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